

생활속 법령상식

판결확정후 승소한 채권자가 별도의 위자료 지급방법은...



글 _ 박종복 변호사

판결확정후 승소한 채권자가 별도의 위자료 지급을 요청하며 경매절차에 착수하는 경우, 패소한 채무자는 판결금을 공탁한 뒤 청구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한다.

Q 최근 법원으로부터 본인이 A에게 금 1,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. 본인이 A에게 돈 1,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려고 하였으나, A는 위 돈 이외에 정신적 위자료로 1,000만원을 추가로 더 달라고 요구하며 본인 소유 아파트에 경매신청을 하였다. 대책은?

A 결론부터 말하면 귀하는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법원에 공탁한 뒤 A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 제기 및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.

청구이의의 소란 채무자(귀하)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익을 내세워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한다. 귀하의 경우 귀하는 A에게 판결문에 표시된 판결원금 및 지연이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판결문에 표시되지도 않은 정신적위자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A가 추가적인 정신적위자료의 지급을 요구하며 판결금의 수령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귀하는 법원에 A 앞으로 판결금 및 지연이자액을 공탁하여 귀하의 A에 대한 판결문상의 채무를 전부 소멸시킨 뒤, 그 사유를 들어 제1심 관할법원에 A의 귀하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. 위 판결에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강제집행이 중단된다.

다만 주의할 점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귀하 소유 아파트에 대하여 A가 신청한 강제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되므로 청구이의의 소 제기과 동시에 별개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은 뒤 이를 집행기관(집행관사무소)에 제출하여 강제집행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.

만약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정지시켜 놓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확정전에 강제집행이 종료되면 귀하 소유의 아파트가 타인에게 경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. ❖